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45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 및 산정 방법 개선, 부과·징수 시기 명확화,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(안 제20조제1항제4호)

- 1) 현행: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
- 2) 변경: 군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

나.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 시기 명확화(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)

- 1) 현행: 건축 인·허가 시 부과
- 2) 변경: 건축 인·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

다.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(안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)

라.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(안 별표 5)

- 1)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
- 2) 산술평균 ⇒ 기하평균(물가상승에 적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 제6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2. 2. 16.~3. 7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」(이하“조례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이“를 “규칙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·제2항 중 “조례시행규칙이”를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20조 조 제목 “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”을 “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 61조제3항”을 “법 제61조제1항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“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”를 “군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”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“인·허가 때 부과한다.”를 “인·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,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”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“한다”를 “함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(임시사용승인 포함)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,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조례시행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가설건축물(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1년 이하: 50퍼센트
2. 1년 초과 3년 이하: 30퍼센트

제31조 조 제목 “(행정위탁)”을 “(행정협의)”로 한다.

제32조를 삭제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0조·제22조·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 신고·허가,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일시사용신고)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「<u>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조례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배수설비의 시공)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상·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·보수 등 <u>조례시행규칙</u>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<u>조례시행규칙</u>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) ① <u>법 제61조제3항</u>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오수발생량 1m³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</p>	<p>제4조(일시사용신고)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규칙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배수설비의 시공)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상·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·보수 등 <u>규칙</u>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<u>규칙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<u>법 제61조제1항</u>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오수발생량 1m³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</p>

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

- 5.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(세제곱미터/일)에 단위단가(원/세제곱미터/일)를 곱하여 산정
- 6.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가.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·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·허가 때 부과한다.

나. 징수(납부)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,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·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제21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~③ (생략)

제22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①~③ (생략)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위에서 군 공보, 계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

- 5.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(세제곱미터/일)에 단위단가(원/세제곱미터/일)를 곱하여 산정
- 6.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가.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·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·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,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

나. 징수(납부)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,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·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(임시사용승인 포함)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, 납부시기는 준공전

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31조(행정위탁)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제32조(권한위임)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가설건축물(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1년 이하: 50퍼센트
2. 1년 초과 3년 이하: 30퍼센트

제31조(행정협약)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<삭 제>

【별표 5】

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

1. m^3 당 원인자부담금 = $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(원)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$

▷ (현행) $\alpha = \left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}}{100}\right)^n$

(개정안) $\alpha = (1 + R_1) \times \dots \times (1 + R_n)$ ▷ 환경부 권고

▷ (신설) R(%):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

▷ n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

2.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(간선관로)를 포함한다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
3. 거창군에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거창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

